

## 가.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



###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

-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우선 신청
  - 다만, 국비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시비 지원 가능
- 민간가정 어린이집(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)에 한하여 보육도우미 추가지원
- 지원인원 : 1개소당 최대 2명지원(국시비 보조교사, 보육도우미 모두 포함)
  - ※ 보조교사 2명인 경우 보육도우미 추가지원 불가
- 인건비 지원기준 : 만65세까지 지원하고,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
  - (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.30., 하반기 출생대상자는 12.31.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)
-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- 어린이집과 보조교사,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,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(근로계약서 명시)

### 1) 국비 지원 보조교사 기준

#### ○ 지원대상

-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/통합 어린이집
- 평가인증 유지, 영아반 2개이상 운영, 정원충족률70% 이상인 어린이집

※ 다만,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, 영·유아반 2개 이상, 정원충족률 70% 이상일 때 지원 가능

#### ○ 지원인원 :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,

-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1명 추가지원(1개소당 최대 2명 지원)

- 장애아 현원 12명이상 보육하는 전문/통합 어린이집
- 영아반 6개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(평가인증유지, 정원충족률 70%이상)

#### ○ 지원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을 경우, 영아반 2개 이상 운영, 평가인증 유지 기준 충족 시 정원충족률 70%미만도 선정가능

### 2) 시비 지원 보조교사 기준

#### ○ 지원대상 : 국비지원조건을 미충족하여 국비 지원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

(단, 유아반 3개 이상은 제외)

※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

#### ○ 지원조건 :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

#### ○ 지원인원 : 국비지원 인원과 동일(국비지원 중복불가)

#### ○ 지원내용 : 1일 4시간(월~금, 주 20시간) 근무

- 인건비 지원 : 월 973천원(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
○ 업무내용

-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
- 보육·놀이·학습·급식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
-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담임교사의 보육업무 전담가능
  - 담임교사의 근무중 휴게시간(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시간)
  - 휴게시간 외 담임교사의 외출, 조퇴 등 1일 미만의 공백(담임교사 업무 대행으로 연장 근로발생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)

3) 보육도우미

○ 지원대상 : 민간.가정.협동 어린이집(현원40인 이상 서울형 제외)

※ 경과규정 : 국공립 및 현원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은 개정지침에 의거 보육도우미 미지원대상이나, 종전 지침에 따라 보조교사 대신 보육도우미를 선택하여 고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2020.2월까지 보조교사 지원없이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가능

※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

○ 지원조건 :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

○ 지원인원 : 1개소당 1명 지원(보조교사와는 별도 지원 가능)

○ 지원내용 : 1일 4시간(월~금, 주 20시간) 근무

- 인건비 지원 : 월 871천원(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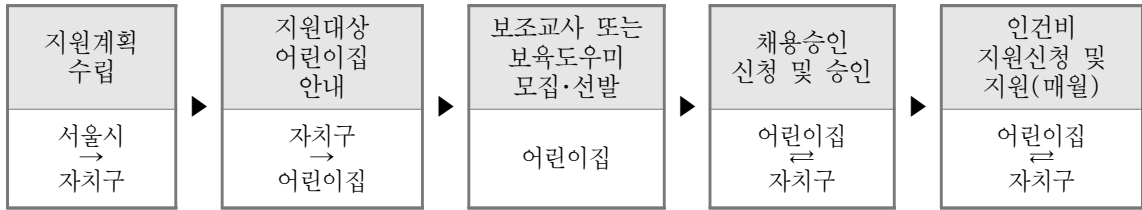
4) 보조 교사 및 보육도우미 운영 안내

○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

구 분	보조교사	보육도우미	비 고
자격조건	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	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※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	성범죄경력자,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된 자 채용 제외
주요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유아 보육 보조</li> <li>• 보육공백시 대체보육</li> <li>• 행정사무 및 급식(배식), 청소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정사무 및 급식(조리), 청소 등</li> </ul>	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
	※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		
근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일 4시간, <u>주 20시간</u> 근무</li> <li>•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 가능(근로계약서 명시)</li> <li>• 연차,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</li> </ul>		처우개선비,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

○ 지원절차

- 어린이집에서 지원인원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공개모집하여 선발→자치구에 임면보고 및 적격성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채용
- 시·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 후 선발(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 이행 철저)



### ↓ 지원 제외 대상

-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(안내일)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(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·명령 제외)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
  - 다만, 행정처분을 받았으나,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
-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(안내일)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
- '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

#### ○ 경력관리

- 교직원(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)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)에 임면 사항을 입력·관리
- 교직원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자격정지, 자격취소,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·관리

#### ○ 유의사항

-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출산휴가 시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대체교사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
-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분장표 작성하여 구비토록 지도
-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,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

### ↓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 외 활용 사례

- 보조교사가 특정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경우
- 보조교사·보육도우미가 원장의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경우
-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운전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
- 원장 겸 보육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
- 어린이집 원장의 비서처럼 활용하는 경우
-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대표자,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경우
-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종사자(운전원 등)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,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 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